

별첨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2024. 4. 4(목)

금 융 위 원 회
금융데이터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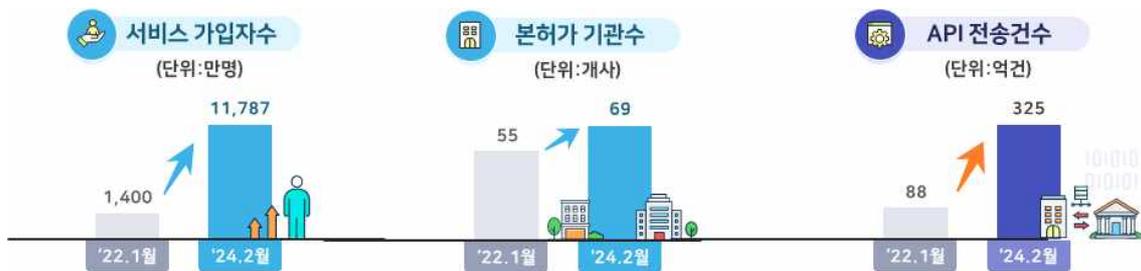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문제점	2
III. 추진내용	3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4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6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11
4.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15
IV. 기대 효과	16
V. 향후 일정	17

[참고] 마이데이터 개요

I. 추진배경

- '22.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이는 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서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열람 등을 스스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권을 강화하는 취지
 - *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연금상품, 전자금융, 통신, 공공정보 등 720개 정보항목
- '24.2월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69개사) 및 이용자 수(1억 1,787만명)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빅테크, 비금융회사* 등 소비자와 접점을 가진 다양한 회사들이 서비스 제공중
 - * 이커머스 업계, 통신3사, IT 업계(SK플래닛, LG CNS 등) 등
- 또한, 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활용한 ①대환대출, ②보험상품 비교·추천, ③신용점수 올리기 등 금융플랫폼으로서의 이용자 편의 제고에 기여

① 대환대출(신용('23.5.31.), 주담대('24.1.9.), 전세('24.1.31.))에 15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참여하여 기존 대출내역 조회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 대출이동 차주수: 신용 147,365명, 주담대 17,933명, 전세 5,980명('24.3.31. 기준)

②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24.1.19.)에 1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참여

* 자동차보험 : 약 18,218여건 체결, 용종보험 : 165여건 체결('24.3.27. 기준)

③ 마이데이터* 정보를 CB사에 제공하여 신용점수 올리기에 활용

* 금융마이데이터(통신비), 공공마이데이터(건강보험 납부내역, 소득증명원 등)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측면

① (보안) 마이데이터 허가시 정보보호·보안 기준*을 심사, 보안 취약점 수시 점검 등

* (法§20⑥, 令§37⑥, 감독규정[별표3]) 망분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접근통제 등 구축

② (소비자 보호) 비교·추천시 신용정보법령상 엄격한 행위규칙* 준수 의무

* (令§18의6①⑥.) 본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서비스의 추천 행위 금지

II. 문제점

1.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금융자산·부채, 거래내역이 불완전하게 제공

- ① 마이데이터 이용시 본인의 금융자산·부채 내역에 대해 일괄조회*가 제한됨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 등의 금융자산 등의 조회가 어려움

* 마이데이터 가입시 금융회사 및 상품을 개별 선택하도록 의무화

- ② 이용자가 자신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해도 일부 결제수단에 따라서는 상세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가 미제공

* 예 : 00음식점에서 짜장면, 탕수육 구매시 "짜장면 외 1 / 이니시스(PG사명)" 표기

2. 오프라인 영업 및 경영·부수업무 제한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제약

- ① 오프라인에서 가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령층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

- ②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결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금융 회사의 업무에 대한 경영 등이 제한되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곤란

3. 이용자의 정보 관리가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불편함 발생

- ① 마이데이터로 조회되는 자산에 대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고, 서비스 가입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과정 등이 불편

* 조회 후 불필요한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 ② 지나치게 많은 동의 절차와 1년으로 제한되는 가입 유효기간 등으로 인해 이용이 번거로움

4. 제3자 정보 제공 및 장기 미사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

- ① 제3자 정보 제공시 사후관리* 장치가 미흡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유출·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데이터 판매는 금감원의 부수업무 사전신고 대상이나, 판매 이후 이용자가 제3자 정보 제공을 철회시 해당 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② 장기 미사용자의 정보가 파기 되지 않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지속 저장되어 보안 등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

Ⅲ.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①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②영업 활성화, ③이용자 편의성 제고, ④마이데이터 정보보호 추진

	추진목표	세부과제	비고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가. 전체 금융자산 조회 ⇒	▶ 가입시 금융자산 일괄 조회	시스템
	나.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	▶ 휴면예금·보험금 조회·환급	전금법 시행령
	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 전금업자가 PG사로부터 상세내역을 받아 제공 ▶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 추진	관계부처 협의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가. 오프라인 가압조화활용 ⇒	▶ 대면 영업 등에 따른 절차 및 내부통제방안 마련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나. 겸영·부수업무 유연화 ⇒	▶ 겸영·부수업무 범위 및 사전신고제 개선	신정법·시행령
	다. 결합기준 명확화 ⇒	▶ 마이데이터와 he데이터 간 결합허용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라. 정기적 전송범위 구체화 ⇒	▶ 정기/비정기 전송에 따른 전송범위 차별화	가이드라인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가. 어카운트인포 연계 ⇒	▶ 소액(100만원) 비활동성(1년미만) 계좌 해자잔고이전	시스템
	나. 동의 절차 간소화 ⇒	▶ 2단계를 1단계로 개선	가이드라인
	다. 본인정보 관리 강화 ⇒	▶ 가입내역 및 제3자 제공 조회·철회 기능 신설	시스템·가이드라인
	라. 가입 유효기간 연장 ⇒	▶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	가이드라인
	마. 청소년 이용 개선 ⇒	▶ 법정대리인 동의 연령을 19세에서 14세로 정비	감독규정
4.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가.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	▶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한 활용·삭제	시스템·감독규정
	나.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	▶ 이용자의 삭제 요청권 보장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다.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 전송 중단(6개월), 정보 삭제(1년) 도입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가 전체 금융자산 조회

- (현행)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시 금융회사 및 개별 상품을 직접 선택하므로, 장기 미거래 금융회사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생
 - * 장기 미사용 예금 등은 금융회사별로 앱을 설치해서 조회·환급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또한, 가입 시 금융회사 및 상품별로 지나치게 많은 선택을 하게 하여 고령층 등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 (개선) 이용자가 ① 모든 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하고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② 열람·제외·계좌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

①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이데이터 가입(최초 자산 연결) 이후 새로 금융회사의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자산을 추가

- 마이데이터 조회 범위에 은행·보험회사의 휴면예금·보험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분은 마이데이터앱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

< 마이데이터 조회 범위에 추가되는 숨은 예금·보험금 범위 >

개별 은행	개별 보험회사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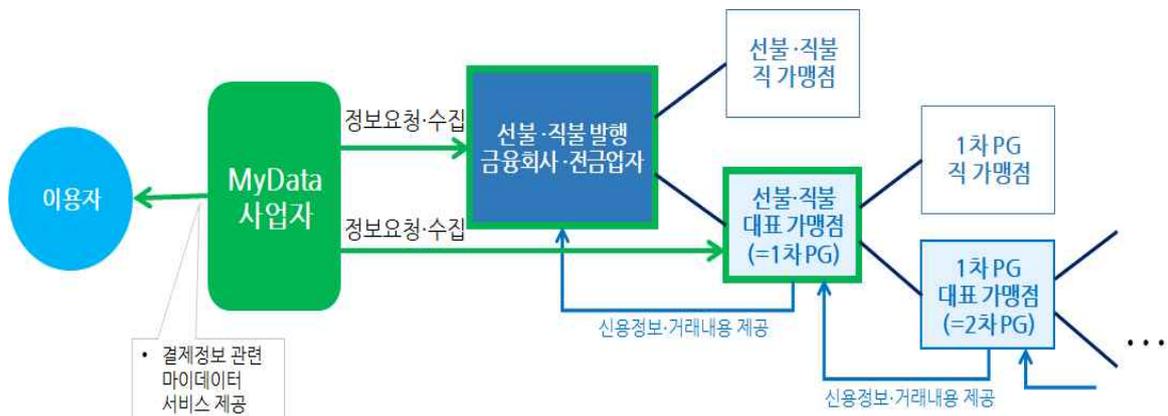
② 조회된 내역을 기반으로 열람·제외·계좌해지(「어카운트인포 연계(3-가)」) 등을 통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 필요사항 : 시스템 구축(서민금융진흥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나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선불·PG사에게 결제정보를 받아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정보품질이 낮아* 소비자 불편 발생
 - * 예: 00페이 카드간편결제를 이용해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음식점)에게 주문시, 00페이에서 구입한 것으로 표시 → 최종 재화·용역 제공자인 음식점은 미표시
- 다단계 결제구조 하에서 최종 재화·용역 제공자의 정보가 결제(카드·선불)·상위 PG사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
 - * 예: 선불업자는 직계약을 맺은 1차 PG를 가맹점으로 인식하여, 1차 PG 하위에 있는 실제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곤란
- (개선) 전금법 개정('24.9월 시행)으로 선불업자도 최종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 만큼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을 확대
 - * 모든 PG사에게 재화·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선불·직불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 신설(전금법§37⑤)
-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결제금액은 누락없이 제공 되도록 하고, 그 외 거래품목 등 세부 정보도 제공될 수 있을 전망
- 이를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결제·상위 PG사를 통해 최종 판매자 정보 등이 포함된 결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금법 개정시 마이데이터 정보수집 구조>



👉 필요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시행('24.9월)

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현행)** 금융상품 가입시 필요한 정보 중 소득 정보 등을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받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활용 서비스** 개발이 미흡
 -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 총 70개 금융회사가 10개 묶음정보를 사용 중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추진)**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금융자산 관리에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경영관리 등을 지원
 - 이용자의 공공정보가 금융 마이데이터로 통합 활용될 경우 금융거래시 대출·카드 한도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보로 활용 가능
 - 개인사업자의 영업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확대될 경우, 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필요사항 : 관계부처(행안부 외) 협의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가 오프라인 가입·조회·활용

- **(현행)** 현재 마이데이터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약
 - * 데이터 활용이 주로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우선 비대면 가입을 허용
- 대면 점포 이용자는 본인의 금융자산 통합조회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도 한계가 존재

□ (개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①가입, ②조회, ③활용할 수 있게 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보호 장치*도 마련

* 마이데이터의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시·사유 등을 주기적 점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구조도에 마이데이터 대면 채널 영업 사항 반영 등

① (가입) 디지털 취약계층이 대면방식*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이용자가 가입·열람 및 정보관리 등을 모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영업점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본인 인증(실명 확인) 등을 통해 영업점에 구비된 단말기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핸드폰에 앱을 설치

*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이 아닌 보험 설계사·카드 모집인 등은 제외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타 기관 정보 전송요구 등 동의를 각각 받되, 대면 가입인 점을 고려 서면 동의도 허용

② (조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시¹⁾ 또는 별도 동의²⁾ 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마이데이터를 조회·열람

* 1) 이용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마이데이터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2)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서 분석 목적 등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영업점 모든 직원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현장에 비치된 단말기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열람

* 기존의 온라인 가입자의 경우도 본인인증 후 조회·열람 가능

③ (활용) 금소법 및 신정법상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규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금지(신용정보법 시행령§18의6①⑥)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가 마케팅 등 사전에 동의한 활용 목적 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분석하여 금융상품 비교·추천

- 다만, 구체적인 열람 요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직원·조회 기간 등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

👉 필요사항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정

나 겸영·부수 업무 유연화

□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정법상 열거된 겸영¹⁾·부수²⁾업무**에 대해 사전 신고 후 영위할 수 있어 **빠른 신사업 추진이 곤란**

- 1) 금융법상 모든 금융업, **일부 非금융업**(화물운송업, 출판업, 이동통신요금중개서비스 등)
 2)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 식별확인, 금융상품 광고 및 컨설팅 등

□ **(개선)** 겸영·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춰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를 개선**

① **(겸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포괄주의(Negative)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

- 현재도 **非금융법상 모든 업무에 겸영이 허용**되므로, **금융법상 모든 非금융업무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일부 업종 제외**

* 해당 금융법에서 마이데이터업의 겸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② **(부수)** 영위가능한 업무에 **‘금융위에 신고되어 공고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확대**

- 원칙적으로 **기신고된 업무**로서 금융위에 공고된 업무는 **신고를 생략**
- 다만, 새로운 업무는 **예측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사전 신고 유지**

※ **법 개정 전까지는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자주 신고되는 부수업무** 위주로 신고서 작성 사례 등을 **마련·안내**

* 주로 신고서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많이 소요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규제 현황 >

구분	현행	개선
겸영업무	영위하기 전 신고	영위 후 2주 이내 보고
부수업무	영위하기 7일 전 신고	신고 생략(또는 7일 전 신고)

👉 **필요사항 :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

다 결합기준 명확화

- **(현행)**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의 결합·이용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결합·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제한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수집한 고객 데이터의 결합 등을 케이스별로 판단하도록 규정

- 이용자에게 정확한 분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보유 정보와 마이데이터간 결합을 통한 분석·이용 필요

-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①동의 범위 및 ②제3자 제공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마이데이터의 결합기준을 마련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① **(이용)**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목적”이 공통되는 업무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자체 결합하여 이용*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실명정보)의 이용이 가능 (신정법§33①)

- 다만, 동일 기관에서 정보 수집 시 같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각각의 목적이 공통 적용(교집합)되는 부분만 실명 활용이 가능

< (예시) 목적별 수집한 데이터 결합 >

- ① (서비스 정보 동의목적) 멤버십서비스(A) + 상품서비스 안내·이용권유(B)
- ② (마이데이터 정보 동의목적) 상품서비스 안내·이용권유(B) + 금융자산컨설팅(C)
⇒ 연결시 공통목적인 상품서비스 안내·이용권유(B) 목적으로 사용 가능

- ② **(제공)** 결합한 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실명으로 제공 가능(「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 이용)

*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경우, 제공된 정보는 자동 삭제(「제3자 제공시 보안강화(4-가)」)

- 다만, 결합 전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이용 동의 및 제3자가 특정된 제공 동의를 함께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

① (이용)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동의 범위 외”로 이용할 경우 가명처리 후 자체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이용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가능(신정법§32⑥9의2.)

** 외부위원이 포함된 적정성평가위원회의 심의 필요

-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는 사업자가 순수하게 취득한 정보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서, 고유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했다고 보기는 곤란

② (제공) 결합된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가능

- 다만, 제3자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시 이용기관으로 특정될 필요

*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성 및 제3자의 데이터 처리 환경 등을 함께 고려

👉 필요사항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정

라 정기적 전송 범위 구체화

□ (개선) 신정법상 정기적 전송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기적 · 비정기적 전송시 정보의 조회 기간을 차등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신정법§33의2④)

○ (정기적 전송) 이용자가 주기(1주일~1개월)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음

* 이용자가 설정한 모든 기간동안의 정보를 누락없이 마이데이터 앱에서 확인 가능

○ (비정기적 전송) 이용자는 1개월내의 정보를 제공받음

* 정기적 전송요구를 하지 않은 이용자가 1개월 이상 미접속시, 일부 미제공 정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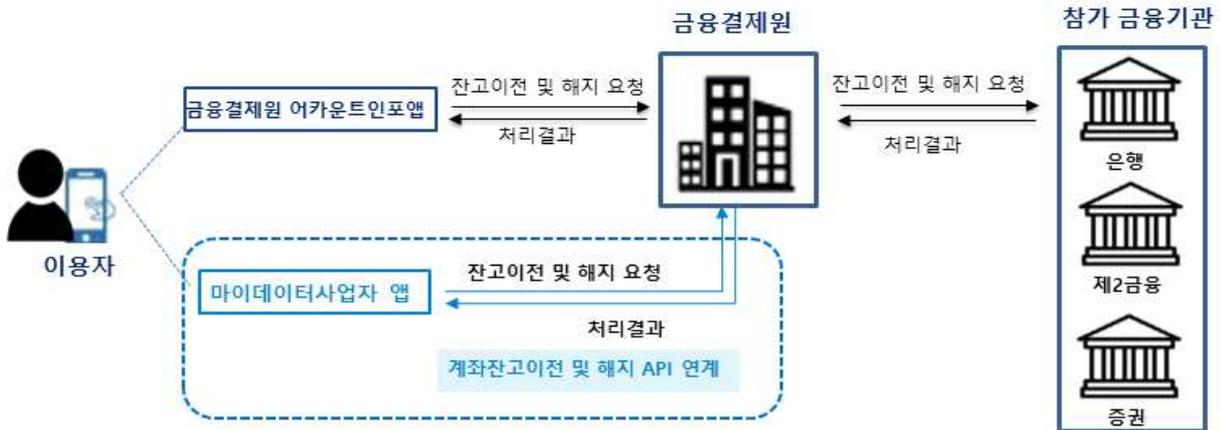
👉 필요사항 : 가이드라인 개정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가 어카운트인포 연계

- **(현행)**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본인의 계좌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열람할 수 있을 뿐, 계좌 자체의 해지 등 관리 기능은 없는 상황
 - 이에 따라,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사용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 **(개선)**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도 어카운트인포의 계좌 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해지)**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하고, 연계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해지 요청
 - * (은행·상호금융)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에·적금 (증권) 예수금 계좌
 - ** 소액 : 잔고 100만원 이하 / 비활동성 :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잔고이전)** 해지 계좌의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기부

< 마이데이터와 어카운트인포 연계(안) >



필요사항 : 시스템 구축(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 마이데이터 사업자)

나 동의 절차 간소화

-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2차례의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한 많은 동의가 필요
 - 이용자는 지나치게 많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 연결 정보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전송요구를 해야 하는 불편 존재

< (현행) 마이데이터 동의체계 >

1차 전송요구(목록)			2차 전송요구(상세 정보)	
■ 전송요구	■ 수집·이용동의	■ 제공동의	■ 전송요구	■ 수집·이용동의

※ 정보주체가 자산 목록을 1차로 조회한 후 선택한 목록에 대해 2차로 상세 정보를 조회

- (개선) 중복된 전송요구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전송요구와 함께 ①수집·이용 및 ②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송요구로 받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조회를 제공하는 목적
 ② 전송요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게 CI 등 본인 정보를 제공

< (개선) 마이데이터 동의체계 >

전송요구		
■ 전송요구	■ 수집·이용동의	■ 제공동의

- ①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2차례의 전송요구는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원화하여 운영

-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방식이 모든 자산 열람방식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목록과 상세정보 전송요구 절차를 단일화

- ② 신정법상 전송요구는 선제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전송요구와 함께 진행

*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전송요구를 받는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모두 특정하여야 함(신정법 §33조의2⑤)

👉 필요사항 : 가이드라인 개정

다 본인정보 관리 강화

- **(현행)**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가입 현황* 및 제3자 제공 내역의 확인이 곤란
 -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신정원)을 통해서 가입 현황에 대한 조회만 가능
- **(개선)** 이용자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 「마이데이터 종합앱」(신정원)을 구축하고 개별 마이데이터 앱과 연계
- ① **(가입조회·취소)** 「마이데이터 종합앱」(이하, 종합앱) 및 개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체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종합앱*에서 가입 취소
 - * 가입취소는 타사업자의 가입 취소 유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요청 불가(개별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당 가입 내역 취소는 가능)
 - 마이데이터 가입 취소시 기존에 전송요구된 정보도 삭제 가능
- ② **(제3자 제공 조회·철회)** 종합앱 및 개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종합앱 및 개별앱에서 제공 동의 철회
 - * 지급대가 여부(없음, 금전, 정보) 및 제공목적(마케팅, 부가혜택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
 - 제3자 제공 동의 철회시 제공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철회시 제공된 데이터도 삭제

 필요사항 : 시스템 구축(신정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정

라 가입 유효기간 연장

- **(현행)**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연장을 위해 신규가입과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
- **(개선)** 이용자가 가입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
 - * 단 과도한 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정보 관리강화(3다)」와 「장기미접속자 정보보호(4다)」 도입

 필요사항 : 가이드라인 개정

마 청소년 이용 개선

- (현행)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
 - *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감독규정§23의3①10.가)
- 다만, 비대면 동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이 어려운 상황
 - *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현재 온라인 증빙(확인)이 어려움
- (개선) 신정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신정법§39의3②)
- 전송요구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연령을 신정법과 동일하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일치
 - 신정법에서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보장한 전송요구권을 하위 감독규정으로 제한(19세 미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특히, 비대면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 * 14세~17세 미만(은행별 상이)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능
- 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①정보 수집·제공 및 ②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
 - * ① 19세 미만의 예금성 상품, 직선불카드, 직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금지(감독규정§23의3①10.나.)
 - ② 19세 미만의 신용정보를 본인 조회·분석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감독규정§23의3①9.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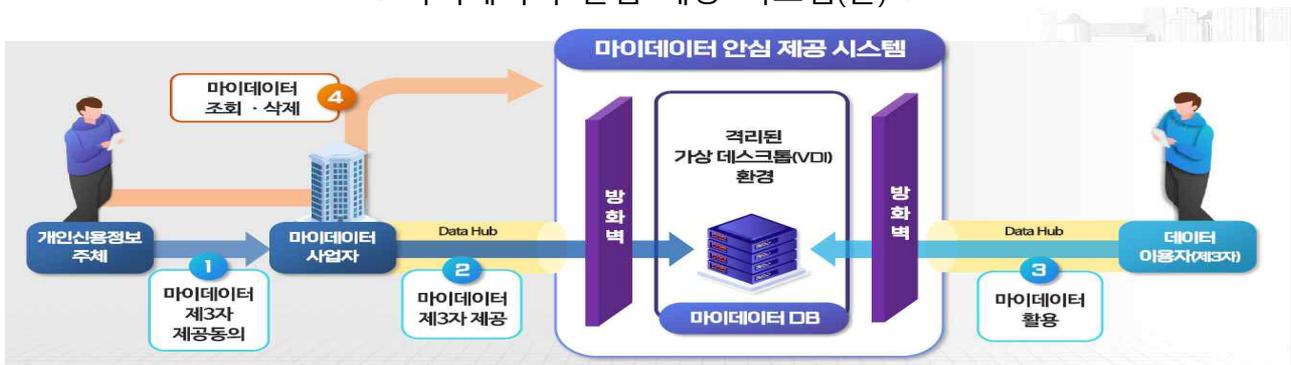
👉 필요사항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4.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가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송요구를 받은 이용자의 데이터 파일 자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
 - 정보제공시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판매 및 중개가 이루어짐
 - * 데이터 판매 및 중개는 부수업무로서 금감원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감독규정 §13의4 ① v)
 - 망분리 규제 등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보안대책이 필요
- (개선) 금융보안원에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정보 보안을 높이고 활용 현황을 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고, 제3자는 시스템내 이용공간에서 정보를 활용
 - 안전한 금융거래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보 보안성을 강화

<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안) >



☞ 필요사항 : 시스템 구축(금융보안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나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 (현행) 이용자가 오래된 마이데이터 정보를 조회·열람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전송요구된 정보는 계속 열람되고 있음

- (개선) 이용자가 전송된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정보 관리권 강화

* 일부 정보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체를 철회하는 「본인정보 관리강화(3-다)」와 구분

☞ 필요사항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다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이슈) 가입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당기간 미접속하는 이용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축적될 우려
- (추진) 이용자가 6개월간 미접속시 정기적인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1년 동안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삭제

☞ 필요사항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IV. 기대 효과

1.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확대 기반 마련

- 자산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는 등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
- ⇒ 높은 보안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바탕으로 소금융업권 플랫폼으로 성장

2.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마이데이터 정보 삭제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제3자가 대규모로 집적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
- ⇒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이 마이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유도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금융 소비자들이 데이터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 금융·비금융 회사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독려

V. 향후 일정

□ ('24.9월) 신정·전금법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 진행

*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

○ 신용정보법 개정안 ⇨ '24년 말 국회 제출

□ (~ '25년)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등 시스템 구축 필요 사항

*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일정 등을 협의

< 마이데이터 2.0 추진 내용 및 조치사항 >

추진 내용		조치사항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가. 전체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 구축		'25년
나.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24.9월
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관계부처 협의		'24년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가. 오프라인 가입·활용 허용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개정		'24.9월
나. 겸영·부수업무 유연화	신용정보법 등 개정		'24년말 (국회 제출)
다. 결합기준 명확화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개정		'24.9월
라. 정기적 전송범위 구체화	가이드라인 개정		'24.6월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가. 어카운트인포 연계	시스템 구축		'25년
나. 동의 절차 간소화	가이드라인 개정		'24.6월
다. 본인정보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개정		'24년말
라. 가입 유효기간 연장	가이드라인 개정		'24.6월
마. 미성년자 이용 개선	감독규정 개정		'24.9월
4.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가.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감독규정 개정		'24년말
나.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개정		'24.9월
다.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개정		'24.9월

1. 마이데이터* 개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용정보법 제2조 9호의2)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하여, 신용정보주체(금융소비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개인정보주체가 선택·동의한 금융회사의 정보에 한정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열람청구 등 자신의 정보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권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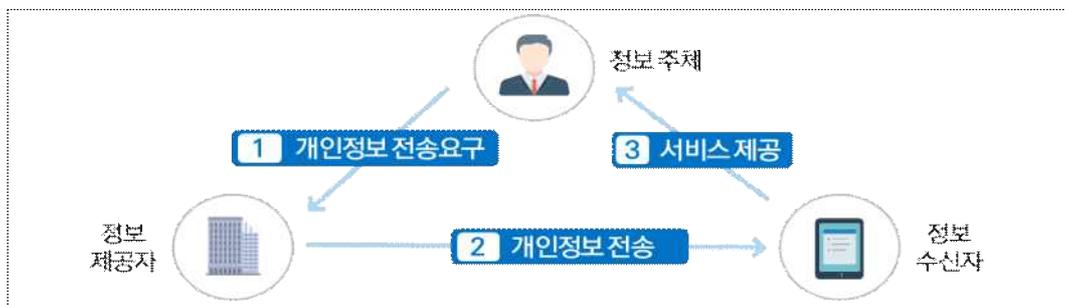
*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업

○ 부수적으로 동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대환대출 등 소비자 편익을 돕는 서비스 제공 중

2.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절차

①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예: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전송요구



② (본인인증) 정보주체는 본인인증을 통해 개별 정보제공자 또는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③ (정보전송) 정보제공자는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